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 
제250회 임시회

# 검 토 보 고 서

2021. 9. 9.(목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 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구청장



**행정건설위원회**

(전문위원 유준상)

#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 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## 1. 제안경위

- 제안자 : 마포구청장
- 제안일 : 2021. 8. 27.
- 회부일 : 2021. 8. 31. (의안번호 : 21-76)

## 2. 제안이유

- 공직자 부조리 신고대상의 공직자 범위와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을 확대하여 신고포상금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 표준안에 따라 일부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.

## 3. 주요내용

- 부조리 신고대상에 자치단체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포함  
(안 제2조)
- 부조리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 징계시효 기준으로 확대  
(안 제4조)
-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문장 정비  
(안 제1조~제3조, 제5조~제12조)

#### 4. 관계법령
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7조(제도개선의 권고) 제①항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안은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, 공직자 부조리 신고대상의 공직자 범위와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을 확대하여 신고포상금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 표준안에 따라 일부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.
- 주요내용으로는  
(안 제2조)에는 부조리 신고대상에 자치단체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포함.
- (안 제4조)에는 부조리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 징계시효 기준으로 확대함.
- (안 제7조)에는 정액 및 차액 지급규정의 신설함.
- (안 제1조~제3조, 제5조~제12조)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따른 문장 정비함.

○ 검토의견으로는

본 조례안은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7조(제도개선의 권고) 제①항<sup>1)</sup>에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- 
- 1) 제27조(제도개선의 권고)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,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·점검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.